■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3. 3. 9.>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

교육과정	신규교육 시간		정기교육 시간			
		직장교육	기본교육			
	기본교육		1. 방사선안전 관리자	2. 방사선안전 관리자 외의 방사선작업 종사자	3. 수시출입자	직장교육
일반분야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 검사분야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매년 5시간 이상

비고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3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해당연도 정기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3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작업 종사 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신규 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